

의안 번호	1707	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----------	------	---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21. 2. 9.(화)
- 나. 제출자 : 중구청장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1. 2. 9.(화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1. 2. 24.(수)

2. 제안설명 요지(신성봉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「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」와 관련, 「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」 일부를 개정하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지원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

나. 주요내용

- 보조금의 지원 대상 추가(안 제5조제1항)
-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 신청 시, 해당 공동주택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 설치 우선지원 추가(안 제5조제2항)위탁운영 현황

다. 근거법규

- 「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」 제2조 및 제5조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이경희)

- 본 조례개정안은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지원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써
 조례 개정을 통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호 받으며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하여 경비원의 처우 개선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거주 만족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며,

-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,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근거법규

「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」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건강한 지역 사회를 구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공동주택”이란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.
2. “경비원”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.
3. “입주자등”이란 공동주택 입주자, 사용자, 입주자대표회의(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,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.
4. “기본시설”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·편의시설(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)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한다.

② 구청장은 「주택법」 제15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(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포함)을 검토하는 경우 경비원의 근무특성을 고려한 기본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.

제4조(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등의 책무) ① 경비원은 입주자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.

② 입주자등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구청장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.

제5조(지원의 범위)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「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」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
2.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·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지원
3. 경비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
4. 그 밖에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실태조사 및 시정권고) ① 구청장은 경비원의 근무상황 및 기본시설의 설치·이용 현황 등 인권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,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7조(인권 교육 및 홍보) ① 구청장은 경비원을 포함하여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8조(포상)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등에게 「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